

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구리 도시관리계획(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4. 04. 05.

구 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- 1) 교통시설(변경)
- 가) 도로(변경없음)
- 나) 주차장(변경)
- (1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2	주차장	토평동 979	-	증)1,598.5	1,598.5		

(2)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12	주차장	• 주차장신설 - 면적 : 1,598.5㎡	•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지에 토평동 일원 주차문제 해소와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주차장 신설

- 다) 자동차정류장(변경없음)
- 2) 공간시설(변경없음)
- 3)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없음)
- 4) 방재시설(변경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용지명	도면번호		면적(㎡)	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근린생활시설용지	C1~C14	C1~C12, C14	39,121.2	37,522.7	· 주차장 1개소 신설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면적 증가 : 1,598.5㎡ ·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개 획지내에서 획지간 합병 허용 (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획지경계로 분할)
공공시설용지	D1, E1, E3, E5~E8, F1~F5, G1~G7, H, I, J, M, P	D1, E1, E3, E5~E8, F1~F6, G1~G7, H, I, J, M, P	120,346.6	121,945.1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도면번호		위치	구분			계획내용	
기정	변경						
C13	F6	토평동 979	용도	허용 용도	F6	기정	-
						변경	· 주차전용건축물 · 주차장 이외의 용도 - 제1종근린생활시설 - 제2종근린생활시설 (공연장, 총포판매소,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,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은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 (공연장, 관람장은 제외) - 종교시설 (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) - 판매시설 (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으로 바닥면적 2,000㎡ 이상인 것,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제외) - 업무시설 (오피스텔은 제외)
				불허 용도	F6	기정	-
						변경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	건폐율	F6		기정	-
						변경	90% 이하
			용적률	F6		기정	-
						변경	450% 이하
			높이	F6		기정	-
						변경	5층 이하

※ F6의 허용용도 중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의 규모는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30% 미만으로 함.

바.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도면번호		위치	계획내용	비고
기정	변경			
C13	F6	도평동 979	- 차량출입허용구간 변경 - (기정) 종로2-13호선 출입→ (변경) 소로1-26호선 출입	

2.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고시 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